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3. 7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【행복나눔과】

# 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행복나눔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」 실행으로 우리 구 교복을 입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지원됨에 따라 해당 사업 및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.

다음은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합니다.

본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폐지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3. 6. 1일부터 6.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,
- 2023. 6. 29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이 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,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00923092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3. 7. 7.  
제출자: 달서구청장  
(행복나눔과장)

## 1. 폐지이유

- 「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」에 근거하여 우리 구 교복을 입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지원됨에 따라 해당 사업 및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### 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6. 1. ~ 6. 21.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### 2) 비용추계서: 비대상

3) 행정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관 계 법 령】

### □ 「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교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를 말한다.
2. “교복”이란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.
3. “교복구입비”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대구광역시장과 행정적·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①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

1.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
2. 다른 시·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·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
3.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2.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
제5조(지원방법 및 절차)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교육감에게 교복구입비를 신청하고,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학교에 교부한다.

③ 학교장은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.

④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환수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

지원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제4조를 위반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